特 輯

# 遞信保險의 運營現況과 民營生命保險과의 關係 發展方向

金 容 德
(通信開發研究院 責任研究員·經營學博士)

◀ 目 次 ▶

Ⅰ. 序 論
Ⅱ. 遞信保險의 變遷過程
Ⅲ. 遞信保險의 販賣政策
Ⅳ. 遞信保險과 民營生命保險의 事業比較
Ⅴ. 遞信保險의 論理的 必要性과 이에 따른 特徵
Ⅵ. 結 論

## Ⅰ. 序 論

한국의 生命保險産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일반대중의 생활수준 향상에 힘입어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여건속에서 체신보험사업은 1982년 12월「遞信預金·保險에 관한 法律 및 遞信保險 特別會計法」을 제정하고, 이 법에 의하여 1983년 7월부터 정기보험외 4종의 생명보험상품으로 보험업무를 재개하였다. 현재 遞信保險은 1991사업년도말 기준으로 總資産 1조 7,084억원, 保有契約額 3조 8,168억원, 年間收入保險料 9,567억원의 사업실적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1980년대 후반부터 불어닥친 보험회사의 對內·外 開放으로 외국생명보험회사의 국내시장 진출 및 지방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지방생명보험회사의 설립으로 보험시장에서의 경쟁양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金融自律化의 진전은 금융산업의 綜合化와 金利의 自律化를 초래하여 각 금융기관 상호간의 업무영역에 대한 規制緩和로 이어져 보험회사와 타금융기관간의 치열한 경쟁도 예상된다.

따라서 이렇게 급변하는 한국의 보험환경속에서 체신보험 및 민영생명보험은 이러한 변화가 필연적인 趨勢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여기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는데, 이에따라 체신보험과 민영생명보험과의 關係 또한 정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이를 위해서는 체신보험이 한국의 보험산업에 있어서 어떠한 役割을 수행하고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論議가 우선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論文은 체신보험의 變遷過程, 販賣政策 및 事業現況을 살펴보고, 체신보험이 국가경

제에 어떠한 影響을 미치는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본 후, 향후 체신보험이 나아가야할 方向을 제시해 보려는데 目的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제Ⅱ장에서는 체신보험의 變遷過程을 3단계로 나누어 자료중심으로 살펴보고, 제Ⅲ장에서는 체신보험의 販賣政策을 우편물 집배원, 전문보험모집인, 우편취급소를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제Ⅳ장에서는 최근 5년간의 체신보험과 민영생명보험의 사업개황을 契約狀況, 收支狀況 그리고 資産狀況으로 구분하여 상호·비교하였고, 제Ⅴ장에서는 이러한 현황파악 및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체신보험의 國家厚生에 대한 役割을 통한 논리적 필요성과 이에 따르는 체신보험의 특징을 제시하였고, 제Ⅵ장에서는 결론 및 國營保險으로서의 체신보험의 發展方向을 거시적인 측면에서 제안을 하였다.

## Ⅱ. 遞信保險의 變遷過程

遞信保險의 變遷過程을 〈표-1〉과 같이 時代를 구분할 수 있고 이러한 시대구분을 기초로 하여 변천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1〉 遞信保險의 發展段階

| 시대구분 | 보험의 명칭 | 기 간 |
|---|---|---|
| 제Ⅰ단계 | 조선간이생명보험 | 1929~1945 |
| 제Ⅱ단계 | 국민생명보험 | 1945~1976 |
| 제Ⅲ단계 | 체신보험 | 1983~ |

### 1. 朝鮮簡易生命保險(제Ⅰ단계)

1912년 일제치하인 조선총독부 체신국은 日本遞信廳이 간이생명보험의 창설을 위하여 실시한 조사자료를 토대로 조선에서도 이 제도를 실시하려 했으나,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실현되지 않았다.

그후 10여년이 지난 1923년 조선상공회의소 연합회가 조선에서도 간이생명보험을 실시해 줄 것을 건의하자 다시 거론되기 시작하였고, 1929년 5월 「朝鮮簡易生命保險令」이 공포되었다. 따라서 1929년 10월부터 終身保險과 養老保險의 2종류로 영업을 개시하였다.

조선총독부 산하 일제하의 국영보험으로서 簡易生命保險의 變遷過程을 살펴보면 〈표-2〉와 같다.

〈표-2〉 簡易生命保險의 變遷現況

| 구 분 | 보험종류의 변천 |
|---|---|
| 1929. 5. 4 | 조선간이생명보험령 제정 |
| 1929. 10. 1 | 조선간이생명보험 업무개시(종신보험, 양로보험) |
| 1938. 10. 1 | 종신보험 및 양로보험 개정 |
| 1941. 10. 1 | 소아보험 판매 |
| 1943. 10. 1 | 우편연금사업 실시에 따라 적시종신연금보험 및 거치종신연금보험 판매 |

資料 : 체신부 체신금융국, 「체신보험통계연보」, 1992. 5.

### 2. 國民生命保險(제Ⅱ단계)

1945년 8월15일 해방과 함께 保險事業에 있어서는 내·외적인 시련과 혼란이 가중되는 시기로서 특히 1950년 6.25동란을 전·후로 전반적인 경제불안과 저축부진의 영향을 받아 쇠퇴일로에 놓여있었고, 1952년 12월 「國民生命保險 및 郵便年金法」을 제정하여 "朝鮮簡易生命保險"을 "國民生命保險"으로 개칭하여 보험사업을 추진하였지만 순조롭게 성장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국민생명보험 사업은 1960년대부터 政府의 종합경제개발계획의 수립과 함께 국민경제의 급격한 성장에 힘입어 1973년도에 계약건수가 1백만건을 돌파하였고 1974년도에는 保險料收入이 10억원을 넘는 순조로운 성장을 이룩한 바 있다. 그러나 정책적인 차원에서 1976년말에 보험사업을 중단하여 1977년 1월 1일에 農協協同組合으로 이관하게 되었다.

조선간이생명보험에서 국민생명보험으로 개칭되면서 보험사업을 영위하여 온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표-3〉과 같다.

〈표-3〉 國民生命保險의 變遷現況

| 구 분 | 보험종류의 변천 |
|---|---|
| 1952. 12. 16 | 조선간이생명보험을 국민생명보험으로 개칭하여 사업개시(종신보험, 양로보험, 교육보험, 징병보험, 즉시연금, 양로보험, 근로연금, 학자연금) 판매 |
| 1961. 10. 10 | 직장보험 판매 |
| 1962. 5. 21 | 교육보험 개선 |
| 1965. 12. 15 | 이익배당금 지급제도 실시 |
| 1966. 9. 21 | 자립보험 판매 |
| 1970. 10. 1 | 징병보험 판매 중지 |
| 1972. 8. 1 | 이익배당금 지급중지 |
| 1976. 12. 22 | 국민생명보험법 폐지 |

資料 : 체신부 체신금융국,「체신보험통계연보」, 1992. 5.

### 3. 遞信保險(제Ⅲ단계)

체신부가 주관하던 國民生命保險을 1976년 12월 22일「국민생명보험법」폐지로 보험사업을 중단하여 6년간의 공백기간이 있었으나, 1982년 12월 31일「遞信預金 保險에 관한 法律 및 遞信保險特別會計法」이 제정되어 "遞信保險"이란 새로운 이름으로 1983년 7월 1일부터 국영보험사업을 재개하였다.

國民生命保險에서 遞信保險이란 새로운 이름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여온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표-4〉와 같다.

〈표-4〉 遞信保險의 變遷現況

| 구 분 | 보험종류의 변천 |
|---|---|
| 1983. 7. 1 | 체신보험사업 재개, 정기보험, 양로보험, 교육보험, 특별보장보험 및 복지보험 판매 |
| 1984. 4. 1 | 가계안정보험, 직장보험 판매(10년) |
| 1985. 5. 1 | 연금보험 판매 |
| 1986. 2. 1 | 계약변경제도 실시<br>직장보험 판매(5년), 복지보험 개선 |
| 1987. 5. 12 | 가계안정보험 개선 |
| 1987. 11. 2 | 학자금보험 판매실시 |
| 1988. 6. 1 | 복지보험 개선 |
| 1991. 4. 1 | 연금보험 개선, 다보장보험 판매 |
| 1992. 1. 1 | 체신건강보험, 상록보험 및 체신장학보험 판매<br>양로보험, 교육보험 및 특별보장보험 판매 중지 |

資料 : 체신부 체신금융국,「체신보험통계연보」, 1992.5.

## Ⅲ. 遞信保險의 販賣政策

체신보험에 있어서의 보험판매는 민영생명보험사와는 달리, 독특한 판매조직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즉 민영생명보험사는 크게 內部組織과 外部組織으로 나뉘어 영업정책과 판매를 수행하고 있는 반면에 국영보험인 체신보험은 대부분이 內部組織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5〉를 보면 체신부 산하 보험판매조직을 살필 수 있다. 즉 6개의 遞信廳(제주국 포함)을 두고 각 청마다 업무국에 遞信金融課를 두어 체신보험 및 체신예금의 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각 우체국마다 본부에서 계획된 보험정책에 대한 독려와 감독을 하고 있다. 체신보험업무를 담당하는 일선기관으로서 대체적으로 규모가 큰 200여개 監督郵遞局에서는 과의 체제를 두고 운영하며, 규모가 작은 3,000여개 其他郵遞局은 주사국으로 운영하고 있다.

〈표-5〉 販賣組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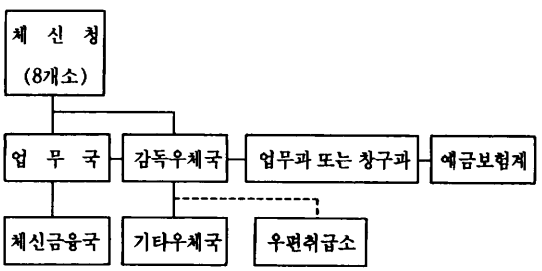


遞信預金·保險에 관한 法律施行規則(83년 7월 1일 遞信部令 738호)제92조에 의하여 「체신관서의 전직원과 체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보험의 모집 및 보험료의 수금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시행규칙에 의하여 각 체신관서의 郵便物 集配員이 보험모집인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1984년 4월 1일 專門保險募集人 제도를 도입하여 체신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국가재정의 한계로 인하여 우체국망을 확장하지 못하므로 대리점제도와 유사한 郵便取扱所를 민간인에게 허가하여 일반우체국에서 하는 모든 일을 담당하게 하고 있고, 이곳에서도 체신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郵便物 集配員, 專門保險募集人, 郵便取扱所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郵便物 集配員 組織

郵便物 集配員은 우편물 수집 및 배달이라는 서비스기능에 힘입어 국민에 대한 좋은 이미지 형성에 용이하며, 郵便物 收取人과의 관계유지는 매우 긴밀하다고 볼 수 있다. 한 예로 전국에 골고루 산재된 郵遞局網을 통한 우편물-편지, 전보, 소포 등- 배달은 집배원들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있으며, 또한 우편물 수취인으로부터 각자 본인들의 필요한 제반행정기관에 대한 민원서류 등도 동시에 발급요청도 받는다. 따라서 이러한 우편물 수취인은 遞信保險事業에 있어서 좋은 고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집배원들은 專門保險募集人과는 달리 그들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면서 보험판매도 함께하므로 보험의 專門性 缺如, 판매방법의 미숙, 집배원의 특수성으로 인한 교육실시 부재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 2. 專門保險募集人 組織

우편물 집배원에 의한 보험판매정책은 公務員의 신분으로서 집배원이 보험판매를 확장하는데에 내

재적 限界性이 있으며 집배원의 增員 역시 정부의 증원억제방침으로 어려울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민영생명보험사에서 행하고 있는 專門保險募集人制度를 1984년 4월 1일부터 도입시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들 전문보험모집인은 민영생명보험사의 보험모집인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급료가 지급되지는 않고 있고, 고정성 기본수당을 지급하면서 보험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체신보험사업조직에는 專門保險募集人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이를 전담하는 해당부서가 없으며, 체계적인 지도와 감독기능이 민영생명보험사보다 부족하고, 專門保險募集人의 자율적인 활동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또한 이들을 지휘, 감독하는 관리자들의 무관심과 관서내 직원간의 갈등도 나타나고 있는 바 專門保險募集人들은 단지 固定給을 지급받기 위한 최소한의 영업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는 실정이다.

### 3. 郵便取扱所 制度

郵便取扱所 制度란 우정업무취급의 代理店 制度와 유사한 것으로 우체국 확장의 일환으로 일반인이 우체국의 건물을 제공하고 우체국 업무-우표의 판매, 소포취급 등-를 행하면서 이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는 제도로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郵便取扱所는 우체국의 업무중 보험업무도 함께 취급하므로 보험모집도 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중앙기관에서 할 수 없는 이유로 개시 초기에는 상당히 保險業務取扱을 제한하여 왔다.

또한, 우편취급소는 專門保險募集人을 채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취급소장 본인들의 활동에 의하여 신계약 및 수금을 하고 있어 계약에 대한 보험취급상황은 극히 부진한 상태이다.

## Ⅳ. 遞信保險과 民營生命保險의 事業比較

1987년 5월 韓美行政協定으로 미국에서 Life Insurance of North America, America Life Insurance Corporation가 제 1단계로 영업을 개시한 것을 시발점으로 하여, 보험시장의 환경은 점차 國際化, 自律化라는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급속하게 보험환경의 변화를 가져온 1987년부터 1991년까지 5년간의 사업개황을 契約狀況, 收支狀況 및 資産狀況으로 구분하여 체신보험과 민영생명보험을 상호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1. 契約狀況

생명보험사업의 계약상황을 新契約, 保有契約 그리고 失效·解約으로 구분하여 체신보험과 민영생명보험의 契約狀況을 비교하여 보면 〈표-6〉과 같다.

첫째, 新契約은 1987년을 기준으로 하여 1991 사업년도말 현재 遞信保險은 1.83배로 증가한 반면, 民營生命保險은 3.16배로 遞信保險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민영생명보험이 체신보험보다 보험판매의 신장세가 높은 이유는 1987년부터 불어닥친 보험시장의 대내·외 개방에 따라 기존 6개 생명보험회사는 자사의 시장 점유율을 고수하려고 노력하였고, 신설생명보험회사는 사업초기에 시장을 먼저 선점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최근 5년간의 연평균 新契約率을 보면 民營生

命保險은 91.5%로 크다란 변화가 없는 반면, 遞信保險은 66.5%로 매년 하향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즉 보험시장의 개방이 가속화 됨에 따라 자율경쟁체제로 돌입하게 되어 기존생명보험회사 대 신설생명보험회사 간의 외형성장을 위한 상호경쟁이 심화되었고, 이에 따라 보험산업내의 경쟁이 심화되어 경쟁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체신보험은 위축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둘째, 保有契約은 1987년을 기준으로 하여 1991사업년도말 현재 遞信保險은 2.43배이고, 民營生命保險은 3.55배 이다.

체신보험이 1987년부터 매년 보유계약의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는 현상은 체신보험계약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短期貯蓄性保險 상품의 만기도래로 인한 자연감소와 신계약율이 매년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민영생명보험은 매년 보유계약의 증가율도 큰 변화가 없다.

셋째, 失效·解約率을 살펴보면 遞信保險은 13.3%로써, 民營生命保險의 29.8%보다 낮은 좋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나 민영생명보험에 비해 단기저축성 상품의 비중이 높다는 점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표-6〉 遞信保險 對 民營生命保險의 契約狀況 比較

(단위 : 억원)

| 구 분 | | 계약상황 | | | | | | 경영효율(%) | |
|---|---|---|---|---|---|---|---|---|---|
| | | 신계약액 | 증가율(%) | 보유계약액 | 증가율(%) | 실효·해약액 | 증가율(%) | 신계약율 | 실효·해약율 |
| 체신보험 | 1987 | 9,368 | 54.8 | 15,668 | 59.5 | 2,660 | 44.0 | 95.3 | 13.9 |
| | 1988 | 10,370 | 10.7 | 20,377 | 30.1 | 4,020 | 51.1 | 66.2 | 15.4 |
| | 1989 | 12,652 | 22.0 | 25,804 | 26.6 | 4,568 | 13.6 | 62.1 | 13.8 |
| | 1990 | 15,186 | 20.0 | 31,659 | 22.7 | 4,577 | 0.2 | 58.9 | 11.2 |
| | 1991 | 17,152 | 12.9 | 38,168 | 20.6 | 5,930 | 29.6 | 44.9 | 12.1 |
| 민영보험 | 1987 | 982,240 | 0.3 | 1,352,848 | 18.9 | 725,534 | 17.7 | 86.3 | 34.2 |
| | 1988 | 1,274,347 | 29.7 | 1,830,317 | 35.3 | 773,805 | 6.7 | 94.2 | 29.5 |
| | 1989 | 1,882,075 | 47.7 | 2,699,893 | 47.5 | 1,001,336 | 29.4 | 102.8 | 27.0 |
| | 1990 | 2,388,859 | 26.9 | 3,617,241 | 34.0 | 1,484,357 | 48.2 | 88.5 | 29.2 |
| | 1991 | 3,106,731 | 30.1 | 4,800,700 | 32.7 | 1,947,788 | 31.2 | 85.9 | 29.0 |

(註) 1. 신계약율=신계약액÷연초보유계약액
2. 실효·해약율=실효·해약액÷(연초보유계약액+신계약액)

資料 : 1. 체신부 체신금융국, 「체신보험통계연보」, 1992. 5
2. 생명보험협회, 월간「생협」, 1992. 5

## 2. 收支狀況

생명보험사업의 收支狀況은 收入保險料, 支給保險金 그리고 事業費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신보험과 민영생명보험의 收支狀況 비교는 〈표-7〉과 같다.

〈표-7〉 遞信保險 對 民營生命保險의 收支狀況 比較

(단위 : 억원)

| 구 분 | | 수지상황 | | | | | | 경영효율(%) | |
|---|---|---|---|---|---|---|---|---|---|
| | | 수입 보험료 | 증가율 (%) | 지급 보험금 | 증가율 (%) | 사업비 | 증가율 (%) | 보험금 지급율 | 사업 비율 |
| 체신보험 | 1987 | 3,527 | 66.6 | 1,745 | 94.9 | 220 | 51.9 | 49.5 | 6.2 |
| | 1988 | 4,800 | 36.1 | 2,982 | 70.9 | 284 | 29.1 | 62.1 | 5.9 |
| | 1989 | 6,117 | 27.4 | 4,063 | 36.3 | 334 | 17.1 | 66.4 | 5.5 |
| | 1990 | 7,803 | 27.6 | 5,590 | 37.6 | 405 | 21.3 | 71.6 | 5.2 |
| | 1991 | 9,567 | 22.6 | 6,882 | 23.1 | 460 | 13.4 | 71.9 | 4.8 |
| 민영보험 | 1987 | 72,941 | 31.3 | 48,233 | 39.5 | 8,300 | 26.8 | 66.1 | 11.4 |
| | 1988 | 93,791 | 28.6 | 57,229 | 18.7 | 10,578 | 27.5 | 61.0 | 11.3 |
| | 1989 | 118,656 | 26.5 | 72,212 | 26.2 | 14,082 | 33.1 | 60.9 | 11.9 |
| | 1990 | 160,436 | 35.2 | 90,940 | 25.9 | 18,714 | 32.9 | 56.7 | 11.7 |
| | 1991 | 193,771 | 20.8 | 128,350 | 41.1 | 24,746 | 32.2 | 66.2 | 12.8 |

(註) 1. 보험금지급율=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
2. 사업비율=사업비÷수입보험료

資料 : 1. 체신부 체신금융국, 「체신보험통계연보」, 1992. 5
2. 생명보험협회, 월간「생협」, 1992. 5

첫째, 收入保險料는 1987년을 기준으로 하여 1991사업년도말 현재 遞信保險은 2.71배로 증가한 반면, 民營生命保險은 2.66배로 증가하였다.

체신보험이 민영생명보험보다 외형상 5년간의 총 증가율은 높으나, 매년 증가추세는 하향하고 있는 반면 민영생명보험의 매년 증가추세는 커다란 변동이 없다. 즉 체신보험의 경우 1987년 66.6%에서 1991년말 22.6%까지 감소한 반면 민영생명보험은 최근 5년간의 평균이 28.5%로 7%의 평균과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추세로 계속 나아갈 경우 체신보험보다 민영생명보험의 성장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둘째, 支給保險金은 1987년을 기준으로 하여 1991사업년도말 현재 遞信保險은 3.94배로 증가하였고, 民營生命保險은 2.66배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保險金支給率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체신보험은 평균 64.3% 이고, 민영생명보험은 62.2% 이다. 체신보험이 민영생명보험보다 상대적으로 保險金支給率이 높은 이유는 단기 저축성보험 상품의 판매비율이 높아 이로 인해 만기로 지급되는 滿期保險金때문이다.

셋째, 事業費는 1987년을 기준으로 하여 1991사업년도말 현재 遞信保險은 2.09배로 증가하였고, 民營生命保險은 2.98배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事業費率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遞信保險은 평균 5.52%로서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반면, 民營生命保險은 11.82%로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체신보험이 민영생명보험보다 사업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현재 사용중인 우체국의 시설 및 각종 비품 등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비

및 사업비율이 민영생명보험의 경우 증가추세에 있는 이유는, 민영생명보험은 보험시장의 대내·외개방에 따른 保險市場의 영역확산을 위해 사업비의 지출이 보험시장의 개방이 절정에 다다른 1989년부터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 3. 資產狀況

생명보험사업의 자산상황은 總資產과 運用資產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신보험과 민영생명보험의 자산상황비교는 〈표-8〉과 같다.

〈표-8〉 遞信保險 對 民營生命保險의 資產狀況 比較

(단위 : 억원)

| 구 분 | | 자 산 상 황 | | | | 자 산 운용율(%) | 자산운용수익율(%) | |
|---|---|---|---|---|---|---|---|---|
| | | 총자산 | 증가율(%) | 운용자산 | 증가율(%) | | 총자산 | 운용자산 |
| 체신보험 | 1987 | 4,910 | 68.6 | 4,551 | 70.4 | 92.7 | 11.8 | 12.8 |
| | 1988 | 7,321 | 49.1 | 6,729 | 47.8 | 91.9 | 14.2 | 15.5 |
| | 1989 | 10,107 | 38.1 | 9,168 | 36.2 | 90.7 | 12.5 | 13.8 |
| | 1990 | 13,007 | 28.7 | 12,227 | 33.4 | 94.0 | 10.7 | 11.7 |
| | 1991 | 17,084 | 31.3 | 15,252 | 24.7 | 89.3 | 13.1 | 14.4 |
| 민영보험 | 1987 | 122,473 | 34.1 | 118,098 | 34.2 | 96.4 | 15.4 | 16.1 |
| | 1988 | 170,670 | 39.4 | 165,009 | 39.7 | 96.7 | 15.9 | 16.6 |
| | 1989 | 226,435 | 32.7 | 218,051 | 32.1 | 96.3 | 13.0 | 13.5 |
| | 1990 | 310,017 | 36.9 | 296,109 | 35.8 | 95.5 | 12.4 | 12.9 |
| | 1991 | 388,261 | 25.2 | 366,512 | 23.8 | 94.4 | 12.0 | 12.7 |

(註) 1. 자산운용율=운용자산÷총자산
2. 자산운용수익율=(자산운용수익×2)÷(연초자산+연말자산-자산운용수익)

資料 : 1. 체신부 체신금융국, 「체신보험통계연보」, 1992. 5
2. 생명보험협회, 월간「생협」, 1992. 5

첫째, 總資產은 1987년을 기준으로 하여 1991사업년도말 현재 遞信保險은 3.48배로 증가한 반면, 民營生命保險은 3.17배로 증가하였다.

최근 5년간 총자산의 增加率을 보면 체신보험이 민영생명보험보다 높으나, 체신보험은 매년 하향추세에 있는 반면 민영생명보험은 커다란 변동이 없다. 즉 체신보험의 총자산의 증가율은 1987년 68.6%였으나 1991사업년도말에는 31.3%이고, 민영생명보험의 경우는 최근 5년간의 평균이 33.7%로 7%내외의 평균과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총자산의 運用收益率도 체신보험이 민영보험보다 1%~2% 정도 수익율이 낮다.

둘째, 運用資產은 1987년을 기준으로 하여 1991사업년도말 현재 遞信保險은 3.35배로 증가한 반면, 民營生命保險은 3.10배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최근 5년간 평균 資產運用率을 보면 체신보험은 91.7%인 반면, 민영생명보험은 95.9%로 총자산에 대한 운용율이 체신보험보다 높다.

최근 5년간 운용자산의 總增加率을 보면 체신보험이 민영생명보험보다 높으나, 매년 증가추세를 보면, 총자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체신보험은 매년 하향추세에 있는 반면, 민영생명보험은 커다란 변동이 없다. 운용자산에 대한 收益率을 보면 체신보험은 국영보험으로서 자금운용에 대한 제약 등으로 인해 큰 변동이 없으나, 민영생명보험은 경제의 흐름에 따라 자금운용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였기 때문에 자산운용에 대한 수익율과 수익율의 변동폭이 체신보험보다 상대적으로 크다.

## V. 遞信保險의 論理的 必要性과 이에 따른 特徵

한국의 경제는 1970년대 및 1980년대에 걸쳐서 高度成長을 이룩하였고, 이과정에서 국민총생산과 소득은 매년 증가하였으며 국민생활수준은 經濟的으로나 文化的으로나 현저한 현상을 보였다. 또한 고용기회의 확대, 노동생산성의 향상 등을 배경으로 餘暇時間이 증대되었고, 이것은 일반국민들로 하여금 가정 및 개인생활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게 하였고, 따라서 일반국민의 욕구는 단순한 의식주생활의 충족을 넘어서서 점차 고도화·다양화되고 있다.

반면, 한국사회는 전통적인 儒敎思想의 퇴조와 함께 급속한 핵가족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평균수명의 연장 및 출생율 저하로 高齡者 人口比率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선진국형 高齡化時代가 본격적으로 한국에도 상륙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따라서, 지난 20년간 추진되어온 經濟政策에 힘입어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급속한 진전과 일반국민생활의 향상으로 복지부문에 관한 국민의 수요가 급격히 증대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수출위주정책에 의존하였던 바, 성장의 과실이 階層間·地域間에 골고루 배분되지 못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일반국민들간에 복지부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가고 있는 동안, 農漁村에서도 도시와 농어촌간의 균등한 복지서비스를 요구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이 없을 때 階層間·地域間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불만이 팽배될 우려가 있다.

다시말해서, 모든 사람은 所得水準에 관계없이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도시의 저소득층이나 농·어촌 주민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즉 그들중에 현대사회로부터 오는 여러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high risk people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財政的으로 또는 地域的인 이유로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經濟的 福祉나 厚生의 分配가 公平(equitable)하지 않다는 뜻이고, 보다 공평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市場을 통해 결정된 후생의 분배에 政府가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될 수 있다.

이에따라 이 부문에서의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증대될 수 있으며, 國營保險으로서의 遞信保險도 국민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의 일부를 담당해야 할 것이다. 즉, 체신보험은 체신부장관이 관장하여 운영하는 국영보험사업인데, '國營'이란 말은 公益性이 크다는 의미로서 국영보험으로서의 체신보험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공공성의 실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말해 이말은 체신보험의 目標를 公共福利增進을 통한 국민경제생활의 安定에의 추구라는 공공성에 두어야 함을 의미

한다. 따라서 도시의 저소득층과 농·어촌 주민들에 대한 복지향상을 도모함은 公定한 所得分配를 도모하는 길로서 체신보험의 궁극적인 目的인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에 직결될 수 있고, 이런 점에서 체신보험은 국영보험으로서 사회의 公平性을 개선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厚生을 극대화할 수 있는 보험사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민영생명보험사가 收益性 위주의 경영방침에 의해서 점포를 都市에 집중시켜 실적위주의 고객관리를 하는 반면, 체신보험은 公益性 위주로 기존 우체국망을 활용한 範圍의 經濟 추구로 費用의 效率性을 제고시켜 非差別的인 서비스를 전국에 걸쳐 제공하고 있고, 이를 통해 민영생명보험사로부터 소외되고 사회경제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는 都市의 低所得層 및 農·漁村 住民에 대하여, 社會保障制度로는 생활보장욕구에 부족한 부분을 자력으로 성취하게 함으로써 한국사회의 厚生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따라 체신보험을 다음과 같은 特徵을 가지고 있다.

첫째, 少額保險이고 가입대상의 零細性이다.

체신보험은 저소득층의 보험수혜를 증진시키기 위한 소액보험이고, 가능한한 보험료를 낮게 책정하고 있으며, 保險加入金額의 限度가 1992년초부터 3,000만원으로서 3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영생명보험의 경우보다는 절대적으로 낮다. 또한 보험사업의 운영측면에서 체신보험과 민영생명보험을 1991년도 新契約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보면, 平均保險加入金額의 경우 체신보험은 400만원이고 민영생명보험은 3,300만원으로 현저하게 적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민영생명보험이 中産層 이상의 소득층을 대상으로 대도시중심으로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동안, 체신보험은 민영보험회사로부터 소외된 低所得層을 중심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加入이 簡便하다.

체신보험은 간이보험의 성격으로 무진사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가입이 간편하다. 즉 가입절차의 간편화와 경비절감을 위해 피보험자에 대한 의사의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소속직원의 面接調査와 가입자측의 성실한 告知義務 이행만으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료 납입은 月納을 원칙으로 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을 가볍게 하고 있다.

셋째, 사업의 非營利性 및 公益性이다.

경제발전에 따른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등 國家政策事業을 수행하기 위한 資金의 수요가 갈수록 증가되는 반면, 금융산업부문의 개방화 및 자율화의 진전은 민간금융기관으로 하여금 經營效率化를 우선으로 수익성 위주의 경영체제를 더욱 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정부의 통제권 밖으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금융기관의 금융을 통하여는 재원조달이 힘든 國家政策事業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해야 하는데, 이와같은 역할의 遂行을 위하여 체신보험도 기여를 하고 있다.

즉 납입된 보험료 중 사업비에 해당되는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순보험료는 체신보험특별회계법에 의거 遞信保險基金의 수입재원으로 삼고 있고, 체신보험기금은 농어촌발전지원자금, 낙후개발부문과 지방경제활성화와 관련된 國公債 買入, 공공사업 및 산업자금지원 등으로 운용하고 있어 정부차원에서의 地域開發事業에 투자하고 있다.

## Ⅵ. 結 論

체신보험은 소규모의 簡易生命保險으로 보급하여 민간생명보험이 채산상 취급하지 않는 마켓을 중심으로 생명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해왔고, 그 자금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 公共分野에 사용되어 국민복지향상에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의 보험환경은 開放化, 自律化, 國際化時代를 맞이하고 있다. 즉, 1980년대 후반부터 불어닥친 보험시장의 對內·外 開放으로 인해 외국보험사와 지방보험사가 난립하게 되었고, 金融自律化의 진전으로 보험시장내는 물론 금융기관 상호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극심한 경쟁속에 놓인 민영생명보험사에서는 국영보험인 체신보험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고려한 선의적인 關係를 定立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된다.

따라서 本 論文은 이를 위하여, 첫째 체신보험의 歷史的 背景과 販賣政策에 대해 살펴보고, 둘째 최근 5년간의 사업개황을 契約狀況, 收支狀況 그리고 資產狀況으로 구분하여 체신보험과 민영생명보험을 비교분석하였으며, 셋째 이를 토대로 하여 체신보험의 社會的·公共的 必要性에 대한 論理的 說明의 제시와 이에 따르는 체신보험의 特徵을 살펴보았다.

끝으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체신보험이 민영생명보험과 어떠한 關係를 유지하면서, 한국의 보험산업의 발전, 더나아가서 한국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

크게 나누어 두가지 方向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현재의 체신보험업무를 민영보험의 업무로서 수행할 수 있도록 일종의 '遞信保險會社'로 전환하는 것이고, 둘째는 소액이고 간편한 간이보험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官業의 입장에서 도시의 저소득층과 농·어촌주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해 나가는 방향이다.

첫번째 방향의 경우, '遞信保險會社'도 민영생명보험사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동일한 規制에 속하게 되고, 법적으로 인가된 모든 영업을 할 수 있다. 국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과 自由市場原理에 입각한다는 점에서 고려해 볼만한 대체안이기는 하지만, 本 論文은 두번째 방향으로의 발전을 체신보험의 발전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즉, 한국의 경우 아직 費用이 많이 드는 민영생명보험사의 하부 판매조직을 농어촌구석까지 설립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과, 기존의 체신부 우체국의 조직망과 인력을 활용하여 민영생명보험사가 채산상의 이유로 대상을 삼지 않는 少額保險을 취급하는 선택안을 고려하여 볼 때, 민영생명보험사가 비차별적인 서비스를 전국에 걸쳐 費用效率的으로 충분히 제공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국영보험으로서의 체신보험은 後者의 선택안으로 제공되어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체신보험과 민영생명보험과의 관계는 競爭者이기보다는 相互補完的 關係로 나아갈 수 있다.

또한 현재 한국은 新韓國建設을 위해 많은 자금의 조달이 시급한 반면 자금조성을 위한 망은 아직 부족한 상태로서, 이러한 현실에 대한 대처방안의 하나로서 체신보험의 역할이 증대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후생복지의 증진 및 균형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 階層間, 地域間에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는 保險서비스欲求를 체신보험이 담당한다

는 役割分擔下에서 체신보험과 민영생명보험과의 관계가 정립되어져야 하고, 이러한 關係定立이 이루어진 후에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구체적인 調整方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 參考文獻


김지영, 「공공경제학 : 재정학」, 영설출판사, 1988.

보험감독원, 「조사월보」, 1990. 5, 1991. 5, 1992. 5.

생명보험협회, 월간「생협」, 1990. 5, 1991. 5, 1992. 5.

체신부, 「체신보험핸드북」, 1992. 1.

_____, 「체신백서」, 1991. 1.

체신부 체신금융국, 「체신보험 통계연보」, 1992. 5.

Rejda, George.E., Social Insurance and Economic Security, 2nd ed., Prentice-Hall, In., 1984.

Williams, C.A. and R.M. Heins,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6th ed., New York : McGraw-Hill, 1989.